

## 미국 미네소타 뉴스평의회

### I. 평의회 설립 배경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의 최대도시인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시에 사무국을 두고있는 미네소타 뉴스평의회(Minnesota News Council)는, 북미대륙에서는 처음으로 1971년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미네소타 신문협회(Minnesota Newspaper Association)의 산하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곧 분리되어, 언론과 공중간의 분쟁을 조정, 심의하는 독립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처음 설립 당시는 기관의 명칭을 미네소타 신문평의회(Minnesota Press Council)로 하였다가 1977년에 방송에 대한 불만사항까지 다루면서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언론관계평의회(하와이 신문평의회가 있긴 하지만 심의·평결기능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임)로서, 이 기관설립의 역사적 배경요인을 미네소타대학교 언론법학자 도널드 길모어(Donald Gillmor) 교수는 크게 3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미네소타주는 북구에서 이민 온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세운 주로서 유럽적인 공공성의 이념이 강한 곳이다. 둘째, 주민들이 다른 곳에 비해 개방적이며 정치적 참여의식이 강한 곳이다. 셋째, 언론 기관들이 자율적 심의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네소타 뉴스평의회가 설립될 당시 미네소타주에는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이나 규정이 주법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들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신문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소리가 한껏 높았던 사회적 배경을 안고 탄생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미네소타 주에는 방송 중 누군가가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방송국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신문·방송기관이 철저하게 법적인 보장과 혜택을 받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뉴스평의회는 필요성은 시민·독자들 뿐 아니라 언론 내부에서까지 일층 강조되었던 것이다.

미네소타 뉴스평의회 외에 미국에는 전국뉴스평의회(National News Council)가 있었다. 하지만 이 기관은 1973년 3월에 발족된 후 만 11년만인 1984년 6월에 해산되고 말았다. 현재 미국은 신문사 자체 내에 옴부즈맨(Ombudsman)을 둬으로써 자율적 심의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옴부즈맨 제도는 20년 전 켄터키주에서 발행되는 쿠리어

저널 앤드 타임즈지(Courier Journal and Times)에서 비롯되었으며 지금은 38 개 신문사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II 평의회 성격 및 목표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미네소타주 내의 신문사들과 방송국들에 대한 불만호소를 심의, 평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언론인들로 구성된 자발적이며 비정부적, 비사법적 자율 기관이다. 뉴스평의회는 다음과 같다.

- (1) 언론보도의 부정확성, 불공정성으로부터 공중을 보호한다.
- (2) 정보의 자유유통을 보호하는 대신 저널리즘의 질적 수준향상에 힘쓴다.
- (3) 언론과 공중과의 이해협력을 도모한다.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언론사에 대해 강제권한이 없지만 평결 및 평결문 유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각 언론사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 (1) 사실보도와 논평칼럼에서의 명백한 오보를 정정할 것.
- (2) 선정적 보도경향을 자제할 것.
- (3) 중요한 사건보도에서 공정성, 공평성, 정확성을 기할 것.
- (4) 여론조사보도에서 자료수집과정과 조사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것.
- (5) 독자투고, 정치광고를 게재하거나, 방송하는데 있어 공정하면서도 비차별적 정책을 채택할 것 .

## III. 평의회 구성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24 명(의장 포함)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4 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인 12 명은 신문과 방송계(각각 6 명씩)를 대표하는 언론인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12 명은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비언론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서 중임할 수 있으며, 평의회 의장은 현직 대법원판사 가운데서 선임한다. 위원의 임명은 평의회 자체 내에서 결정된다. 평의회 위원 구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인과 방송인의 대결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 1 명과 사무원 1 명으로 되어 있다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일반 위원들과 이사회라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들 가운데서 임원진을 선출한다 임원진은 의장, 부의장(혹 부의장단), 서기, 재정담당간사로 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지도, 감독을 받는다. 불만 호소 건에 대한 처리는 일반 위원들의 심의회회의에서 이뤄지며, 이사회는 평의회 의 제반 업무를 관할하게 된다.

#### IV. 평의회 심의절차

중립적인 비사법 기관으로서의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법적 문제를 다루지는 않으며, 언론보도의 오보문제와 윤리문제를 심의하며, 다음 절차에 의해 언론과 공중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

(1) 먼저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직접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서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한다. 여기서 조정이 안될 경우 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할 수 있으며, 불만호소에 따른 제반비용은 무료이다.

(2) 일단 불만호소가 접수되면 평의회 사무국은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여 해명서를 요구하게 되며, 불만호소인과 언론사 사이에서 서면을 통하여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많은 경우가 이 과정 속에서 화해에 이르게 된다. 83 년의 경우 76 건의 불만호소건수 중 72 건이 이 한계에서 해결되었음) 그러나 평의회 사무국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견이나 社說에 대한 불만을 접수, 취급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불만호소에 대한 처리과정이 더 진행되기 위해서는 불만 호소인이 불만 호소 건을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권리포기각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심의는 재판에 대한 보충과정(supplement process)이 아니라 그 대안(alternative)이기 때문이다.

(3) 위 단계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public hearing)를 개최하게 되며, 당사자 양측의 진술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증언도 청취하게 된다. 청문회는 24 명의 위원 중 과반수이상인 참석해야 성립된다. 청문에 대한 기간의 제한은 없다. 기간제한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2~3 개월 내에 끝나지만 6 개월 이상 걸리는 사건도 간혹 있다

(4) 평의회는 평결내용은 보도사항으로 작성되어 각 보도기관이 이를 자발적으로 보도케 한다. 평의회는 해당 언론사에게 결정사항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200 여 개의 미네소타주내의 신문 대부분이 평의회는 평결문을 게재하고 있다.

## V. 평의회는 역할과 활동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역할을 전술한 바와 같이 재판의 대안 기구로서 규정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미니애폴리스 트리뷴지(Minneapolis Tribune)의 옴부즈맨(Ombudsman)이자 전 전국뉴스평의회(National News Council)의 사무국장이었던 리처드 커닝엄 씨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평의회는 법원보다 사건처리속도가 빨라 시간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 평의회 심의는 재판과는 달리 경비가 들지 않는다

(3) 평의회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기엔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사건이라도 보도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윤리적 문제들을 거론할 수 있어 그 대상 폭이 넓다.

(4) 평의회에서는 법정의 경직성을 벗어나서 비교적 자유롭게 문제를 다룰 수 있다.

### 1. 평의회는 불만호소처리현황

미네소타 뉴스평의회가 1971 년에 설립된 후 1985 년까지의 불만호소처리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만호소인의 유형을 보면, 전체 건수 750 건 가운데 일반개인이 379 건(50%), 일반단체가 110 건(15%), 공공관리가 89 건(12%), 선거입후보자가 73 건(10%), 공공단체가 28 건(4%),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 26 건(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 입후보자들이 불만을 호소한 건수가 73 건(10%)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관한 보도가 신문과 독자 사이에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73 건 중 대부분이 1980 년과 1984 년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때 미네소타주 언론들의 총선보도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 불만호소의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건수 1,114 건 가운데 명예훼손 및 보도의 공정성(fairness) 문제가 391 건(35%), 보도의 윤리성(ethics) 문제가 318 건(28.5%), 보도의 정확도(accuracy) 문제가 266 건(24%), 미디어 액세스(media-access) 문제가 117 건(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미디어 액세스 문제는 독자투고 및 정치광고에 있어서 언론사가 편파성을 보였을 때 불만 호소한 것을 의미 한다.

다음은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 보도의 종류를 살펴 보면, 일반뉴스보도가 전체 807 건 중 555 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실 및 논평이 129 건(15%), 독자투고가 77 건(8%), 정치광고가 46 건(6%)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불만호소처리결과를 살펴 보면, 전체 건수 756 건 중 취하가 455 건(60%)으로 가장 많았고, 당사자 화해가 139 건(18.5%), 평결이 61 건(8%), 각하가 42 건(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불만호소가 심의로 가기 전 화해에 이른 경우가 전체건수 중 거의 1/5 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즉, 평의회가 심의만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심의 전에 당사자들이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한편 취하건수가 가장 많지만 언론사에 의한 압력취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사의 정정보도 약속 및 호의적 반응으로 인해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평결결과를 살펴 보면, 불만호소에 대한 기각이 전체건수 61 건 중 26 건, 불만호소에 대한 지지가 23 건, 부분지지·부분기각이 12 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평의회 재정

미네소타 뉴스평의회는 언론사들과 일반재단, 회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개인들과 일반협회 들로부터도 자발적 헌금을 받음으로써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1985 년의 예를

들면, 언론사들이 2 만 달러, 일반재단과 회사들이 2 만 4 천 달러, 일반개인과 협회들이 1 만 6 천 달러 등 도합 6 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평의회에 내놓았다.

## VI. 평의회 정관

### 제 1 조 명 칭

본 법인(corporation)의 명칭은 미네소타뉴스

평의회(Minnesota News Council)로 한다

### 제 2 조 목 적

본 법인의 설립목적은 법인설립규정(the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명시된 설명을 참고한다. 본 법인은 공익적, 교육적, 학술적 목적들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 제 3 조 사무국

평의회 사무국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 둔다. 본 법인은 이사회(the Board of Directors)의 활동이나 특정 업무에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 위 원

1. 본 평의회 위원으로 첫번째 선출된 위원들은 법인설립규정 제 7 조에 의해 지정된 첫번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인사들이 된다. 새로운 위원선출은 현 위원정족수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위원임명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선출되어지는 모든 위원들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2) 위원 수는 18 인 이상 24 인 이하이어야 한다.

(3) 위원 총수 가운데 절반은 언론매체와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즉, 언론매체를 소유하거나 언론매체에 종사하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위원 총수 가운데 나머지 절반은 실제로 언론매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언론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앞에서 언급된 위원 중 적어도 2 명은 언론매체경영권에 속하지 않은 언론인이어야 한다.

(5) 첫번째 선출된 1 기 위원들은 법인설립친정에 명시된 대로 이사로서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 동안 봉직하게 된다. 1 기 위원들을 승계하는 위원들은 3 년의 임기를 갖게 되거나 다음 승계위원이 선출된 때까지 재임하게 된다. 위원교체는 각 위원 임기 말에 이루어 진다. 그러나 특정위원의 유고시 그 위원을 승계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기간만 채우게 된다.

(6) 특정위원이 위원 피선출 요건을 계속 구비하고 있다면, 1 차 중임이 허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위원에게도 2 차 이상의 중임이 허락되지 않는다. 전임위원은 이사회에서 1 년 이상의 공백기간을 갖는다면 이사직에 재선출될 수 있다. 부분적인 재임이 3 년 연속 재임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7) 신임 위원들은 본 정관 제 4 조 1 항 (3), (4)에서 명시된 조건들을 항상 유지하는 선에서 임명된다. 신임위원 선출에 있어 공중과 언론대표의 적절한 구성비를 이루도록 하며, 소수인종집단이 차별되지 않도록 한다

2. 본 정관 제 4 조 1 항 (3), (4)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위원의 사회적 지위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발생 30 일전에 평의회 사무국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이네 그 위원 임기는 평의회 사무국장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 일 후에 종료되거나 90 일 전에 승계위원이 임명된다면 신임위원임명과 동시에 종료된다.

3. 각 위원들은 총 위원정족수의 과반수 이상투표에 의해 그 위원직을 면직당할 수 있다.

4. 본 평의회 위원들의 모든 회합과 회의는 평의회 사무국, 또는 이사회에 의해 지정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들 전원의 서명승낙에 의해 지정된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단, 주내외에 특별히 다른 장소를 지정하게 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연차 위원총회는 1975 회계년도부터 매년 2 월 중 두 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6. 위원들의 임시회의는 이사회의 회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회장의 부재시 임원진 가운데 서기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요청에 의해서도 소집이 가능하다. 이사들과 임원들은 평의회 위원 중 2 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모든 임시회의에서 집행되어지는 업무는 당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국한된다.

7. 평의회 위원들의 연차총회 및 임시회의에 대한 통보는 각 회의에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에게 적어도 10 일 전에 우편으로 전달된다. 각 위원들의 주소는 평의회 사무국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며, 우편은 요금별납제로 한다.

8. 모든 위원들은 각 회의에서 1 인 1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투표나 중복투표는 허락될 수 없다.

9. 평의회 위원들의 모든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재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다. 단, 본 정관의 변경이나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의에서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그 회의가 연기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질 수 있다. 회의연기에 대한 공지는 연기되는 회의석상에서의 발표로 족한다. 연기된 회의에서 정족수에 달할 경우 안건은 처리될 수 있으며, 처리된 안건은 원 회의에서 통과된 것처럼 유효하게 된다.

10. 위원직에 대한 명의이전이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11. 이사회는 투표권이 없는 대리 위원들을 1~2개 그룹 정도로 예비해 둘 수 있다. 그러한 대리 위원들은 이사회에서 종종 부여하는 자격조건에 따라 선임된다. 그러나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제 5 조 이 사(Directors)

1. 본 평의회의 이사회(the Board of Directors)는 평의회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평의회 내의 임원진의 임원 전원을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

2. 이사회는 평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 전원은 평의회 위원으로서 좋은 신분을 유지하는 한 자신의 사무실을 소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종종 주내외에 상관없이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매년 임원진 선출과 부수업무처리를 위한 이사회 연차총회는 평의회 위원연차총회가 열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위원연차총회에 이어 곧 개최된다. 따라서 이사회 연차총회에 대한 공고는 불필요하다.

5. 이사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각 이사들에게 회의개최 5일전에만 통지하면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이사 가운데 1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임원진 가운데 의장과 서기에 의해 전술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집될 수 있다.

6. 임시회의개최에 대한 공고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전신이나 우편으로 해도 무방하다.

7. 이사회 모든 회의에서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이상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참석한 이사 가운데 1명이나 다수인이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회의석상에서의 발표를 통해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8. 어느 이사는 회의시작 전후에 회의에 관한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어느 이사는 공지사항 없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 공지사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9. 본 이사회는 본 평의회 정관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합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정관 외의 다른 법규나 법인설립규정, 위원들에게 유리하도록 변조된 정관에 의해서는 좌우될 수 없다.

10. 이사회는 이사들은 이사회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는 가운데서 평의회를 주관하는 이사회위원회를 행사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를 결의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모든 경우에 있어 이사회는 권위와 지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 제 6 조 임원진(Officers)

1. 본 평의회는 임원진은 이사회에 의해서 선출되며 의장(president), 부의장(vice president), 서기(secretary), 재정담당간사(treasurer)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때 부의장은 1명 이상이 되어도 무방하다. 이사회는 그들의 권한, 의무와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임원진을 선임할 수 있다. 임원진 전원은 본 평의회위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임원진은 1인이 동시에 2~3개의 사무실을 소유할 수 있다.

2. 본 평의회는 임원진은 선출된 후 다음 이사회 연차총회 때까지 각자의 사무실을 소유하게 된다. 동 총회에서 후속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선출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특정임원의 자격박탈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투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임원의 사망, 자격상실, 부재, 수행능력상실의 경우나 이사회가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이사회는 특정임원의 권한, 의무, 자격 등을 당분간 다른 임원이나 다른 이사에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임원진에 공석이 생길 경우 새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신입 임원은 전임 임원

의 잔여기간만 재임하게 된다.

4. 임원진 가운데 평의회 의장(president)은 평의회 위원들의 모든 회의에서 의장직을 맡게된다. 의장은, 이사회가 다른 위원들 가운데서 의장(chairman)을 선임하지 않는 한 이사회모든 회의에서 의장직을 맡게 된다. 이사회가 선임한 다른 의장(chairman)이 사망하거나 자격상실, 부재, 수행능력 결여가 발생할 경우, 임원진 가운데 평의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평의회 의장은 이사회 감독과 지도 아래 평의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이사회 모든 결정사항과 지시의 효과적인 수행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평의회 의장은 평의회 인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가 종종 의장의 권한과 의무를 새로 규정하게 될 경우 평의회 의장은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평의회 부의장(vice president) 혹은 부의장단은 이사회가 결정한 지시에 따라 의장의 부재시 또는 수행 불능시 의장을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사회가 종종 부의장의 권한과 의무를 새로 규정하게 될 경우 평의회 부의장은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평의회 서기(secretary)는 이사회와 위원들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사항 및 여러가지 진행 사항들을 기록해야 한다. 서기는 또한 평의회 전 위원들의 명단과 주소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와 위원들의 모든 회의에 관한 통지서 발부는 그의 주관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와 평의회 의장에 의해 규정되어질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임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7. 평의회 재정담당간사(treasurer)는 평의회 자금과 유가 증권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이사회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그는 또한 평의회 내의 모든 현금을 예탁해 두어야 하며, 이사회가 종종 지시한 방식대로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평의회 명성과 신용이 잘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사회가 재정담당간사 외에 어느 특정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재정담당간사는 평의회를 대신하여 모든 수표, 약속어음, 상업어음들을 발행, 작성, 양도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는 매년 개최되는 연차위원회에서 평의회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보고해야 하고, 또한 이사회가 별도 규정한 기타 임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8. 평의회 임원진은 이사회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들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이사회 요청에 따라 보증담보물과 함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채권발행에 필요한 할증금은 평의회에서 지불될 것이다

## 제 7 조 회계년도, 회계 및 감사

1. 본 평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31일로 끝나게 된다.
2. 평의회의 위원들은 관련 위원들과 이사들을 위해 편리한 때에 평의회의 장부와 서류철을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 제 8 조 보 증(Indemnification) (생략)

## 제 9 조 평의회의 조치

법률과 본 평의회의 법인설립규정(the Articles of Incorporation)이나 정관에 준하여, 평의회 외부에 대한 조치는 위원총회나 이사회총회에서 발의될 수 있다. 하지만 전 위원이나 전 이사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회의가 생략될 수도 있다. 서면동의에 의한 외부조치는 위원이나 이사의 마지막 서명이 끝난 시각부터 유효하게 된다.

## 제 10 조 정관조문의 수정

본 평의회 정관이나 법인설립규정의 조문에 대한 수정은 재석위원 3/4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찬성투표자의 수는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위원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관조문수정을 위한 회의는 회의개최 전 적어도 20 일 전에 회의 참석통지서가 전달되어야만 유효하다.